

의안번호	2115429
의 퇴 인	홍문표 의원
회 답 일	2022.06.1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429)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안 제47조의2)

- 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 －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II.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향후 5년간 총 9억원 (연평균 1억 8,000만원)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방문의료서비스 실시 (안 제47조의2)	1.7	1.8	1.8	1.8	1.9	9	1.8

주: 방문의료서비스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1
III. 비용추계의 전제	2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2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2
2.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안 제47조의2)	3
3. 추계 결과	5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가 포함될 경우, 2023년에 1억 7,200만원 및 2027년에 1억 8,800만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9억 200만원(연평균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방문의료서비스 실시 (안 제47조의2)	172	176	180	184	188	902	180

주: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 및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안 제47조의2)
 - 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포함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신설)

Ⅲ.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47조의2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가 포함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환경부 제출자료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¹⁾’의 사례를 참고하여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 및 비용을 산출
 - 석면피해 인정 질병 중 중증환자에 속하는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1급을 대상²⁾으로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 산정
 -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는 추계기간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Ⅳ.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비용추계 대상은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른 비용임

1) 충청남도 14개 시·군의 석면폐증 3급이상(연간 500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실시중

2) 「석면 건강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연구」,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중,
: 호흡기장애 3급이상이면서 의사소견서상 병원내 치료(수술 등) 후 연속해서 간병이 필요한자에게 국한하여 지원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인정 질병 중 석면폐증(1급)이 호흡기장애 3급 이상에 해당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sum_{t=2023}^{2027} \text{방문의료서비스 비용}_t^{1)}$$

이때, t 는 추계기간(2023~2027년)

- 1) 석면환경보건센터(전국 2개소)에서 연간 500명씩 격년으로 2인 1조로 방문의료서비스 실시
- 천안 순천향대병원: 2023년, 2025년, 2027년 실시
 - 양산 부산대병원: 2024년, 2026년 실시
 -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는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① 인건비: 9,200만원 (2022년 기준)

- 사회복지사(경력직) 1인: 5,000만원
- 간호사(신입) 1인: 4,200만원

※ 인건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반영³⁾

② 부대비용(의료용품 구입비, 차량임차비, 주유비, 홍보비 등: 7,600만원 (2022년 기준)

※ 부대비용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⁴⁾

2.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안 제47조의2)

- 환경부 제출자료 및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상자 선정과 방문서비스 단가를 산출
- (대상자) 석면피해 대상 인정자 추계에 따르면 2023년 915명부터 2027년 1,172명까지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는 연간 약 1,000여명임
 - 전국의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천안 순천향대병원 및 양산 부산대병원 2개소 임. 따라서 1개의 센터에서 연간 500명씩 격년으로 석면피해구제 대상자를 상대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산출
 -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는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명목임금상승률	3.5	3.3	3.1	2.9	2.8	3.0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소비자물가상승률(CPI)	4.0	1.6	1.5	1.5	1.5	1.5

[표 2] 석면피해 대상 인정자 추계

(단위 : 명)

연도	합계	원발성 중피종				석면 폐암				석면폐증 1급			
		소계	신규	계속	만료	소계	신규	계속	만료	소계	신규	계속	만료
2023	915	201	68	139	57	520	151	392	104	194	30	170	18
2024	989	215	75	147	60	567	159	431	113	207	31	182	19
2025	1,058	232	83	158	64	607	167	458	131	219	32	193	20
2026	1,113	251	91	170	71	631	175	463	161	231	33	204	21
2027	1,172	273	100	185	76	657	184	492	146	242	33	214	22

주: 석면피해구제기금 2022년~2026년 중기사업계획(안)의 중기 구제급여 지급규모 예측 자료 참조
 (인정자 산정: 신규인정자×0.5 + 계속수급자 + 수급만료자×0.5)
 자료: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제출자료

□ (방문의료서비스 비용) 석면환경보건센터(전국 2개소)에서 2인 1조로 격
 년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천안 순천향대병원: 2023년, 2025년, 2027년 실시
- 양산 부산대병원: 2024년, 2026년 실시

① 인건비: 9,200만원 (2022년 기준)

- 사회복지사(경력직) 1인: 5,000만원
- 간호사(신입) 1인: 4,200만원

※ 인건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반영

② 부대비용

- 의료용품 구입비, 차량임차비, 주유비, 홍보비 등: 7,600만원 (2022년 기준)

※ 부대비용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 안 제47조의2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에 대한 방문의료서비
 스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방문의료서비스 실시 (안 제47조의2)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인건비(A)	95	97	100	103	106	504	101
부대비용(B)	77	78	79	80	81	397	79
추가재정소요 [C=A+B]	172	176	180	184	188	902	180

주: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 및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가 포함될 경우, 2023년에 1억 7,200만원 및 2027년에 1억 8,800만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9억 200만원(연평균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방문의료서비스 실시 (안 제47조의2)	172	176	180	184	188	902	180

주: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 및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	장 이현경
추계세제분석관	지수현
연 락 처	02-6788-3735
	zisu37@nabo.go.kr
